

### 3-1

##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(연구자 협력형)

제안요청서명 (세부사업명)	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- 연구자 협력형 (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)			보안과제 여부 (보안등급)	일반
공모유형	품목지정형			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여부	X
적용대상가점	해당사항 없음	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	X	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대상 여부	X
과제명	※ '해당연구'와 관련된 최종목표(과제종료시),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기술				
지원규모 및 기간	지원분야	지원기간 <sup>1)</sup>	연구비 <sup>2)</sup>	협약형태	선정 예정 과제수
	박사과정	최대 12개월 이내 (*21년 6개월+'22년 6개월)	84백만원 (1차년도 42백만원)	다년도	23개 내외
	박사 후 연구원		104백만원 (1차년도 52백만원)		
<sup>1)</sup> 연수기간은 6~12개월 <sup>2)</sup> 과제당 연구비는 지원인원 학위에 따라 산출 ※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					

#### ▶ 지원목적

-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선도 기관에서의 해외연수 또는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글로벌 감각을 갖춘 융합형 고급인재 육성

#### ▶ 지원분야 및 내용(예시)

지원분야	성과목표	지원내용(예시)
연구자협력형	박사과정 SCI(E)급 논문 또는 Top conference 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보건의료분야 해외 대학, 연구소, 병원 기업 등 해외 선도기관 연수</li> </ul>
	박사 후 연구원 SCI(E)급 논문 또는 특허 출원 * 단, 논문의 경우 주저자만 인정	

※ 제시된 연구목표 이외 추가성과를 연구자가 제안 가능

#### ▶ 지원대상

- 주관기관 : 국내 학·연·병 (상세내용 : 조건 등은 공모안내서 '신청요건' 참조)
- 연구책임자(연수자) :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으로서 박사과정 및 박사후 연구원\*  
\*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의 Ph.D. 또는 7년 이내의 Ph.D.(M.D., D.D.S.)이며, 비정규직이어야 함  
(단, 박사후 과정 해외연수 기수행자는 제외함)  
-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, 전문연구요원(군 대체복무자)은 지원할 수 없음

▶ 특기사항
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			
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역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외 연수기관 발굴 및 협력 체계 구축</li> <li>○ 연수자 발굴 및 선발(기관별 연수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출국을 권장)</li> <li>○ 연수자 및 연수비 전반에 대한 관리·운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수자 확정시 국내외 각각 1명의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</li> <li>- 연수자별 모니터링·멘토링 실시 등</li> <li>- 연수자 총괄 관리 담당자 지정 후 연수자에 대한 종합정보 DB 구축·운영 등</li> </ul> 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 text-align: center;"> <p>&lt; 멘토 역할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연수자(멘티)가 연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언, 타 연구자와의 연구교류 확대 기회 제공 및 지원 등</li> <li>▪ 연수자 관리의 책임은 국내 멘토 및 연수생 소속기관에 있음</li> </ul> </div>																				
연수자 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인당 연수기간은 6~12개월이며, 연수기간 분할은 12개월 연수자에 한하여 1회 가능 (단, 연수개시 후 2년 이내에 연수를 완료하여야 함)</li> <li>○ 선정 후 해당과제에 대한 참여율은 100%이어야 함</li> <li>○ 연수기간 중 연간(12개월 기준) 15일을 초과하는 국내 체류일에 대해서는 연수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해야 함 (연수기간이 6개월인 경우 8일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국내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함</li> </ul> </li> <li>○ 연수자는 연수 종료 후 반드시 귀국해야하며,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국내 복귀 의무 미준수시 해당 연수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예정</li> <li>○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연구비 편성 및 집행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비 산정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당 인건비, 체재비, 준비금, 국내·외 연구비 등을 연구비 편성 및 집행액 기준에 따라 산정</li> <li>* 연간 박사과정 84백만원, 박사후연구원 104백만원 이내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제 지원액</th> <th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비 편성 및 집행 기준</th> <th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간접비**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접비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수자 인건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수자 체재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수자 준비금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국내·외 연구비* 등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수자 구성에 따라 다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박사과정: 250만원/월 박사후: 주관기관 기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역에 따라 다름 (최대 24백만원 이내/연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실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박사생) 20백만원 이내 (박사후) 40백만원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접비 3%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font-size: small; margin-top: 5px;">* 직접비내 세목별(인건비, 학생인건비, 연구시설·장비비, 연구활동비, 연구재료비, 연구수당, 위탁연구개발비)로 자율편성 후 집행 ** 간접비 계산 시, 박사과정생의 국내·외 연구비(20백만원)는 직접비에서 제외</p>	과제 지원액	연구비 편성 및 집행 기준				간접비**	직접비				연수자 인건비	연수자 체재비	연수자 준비금	국내·외 연구비* 등	연수자 구성에 따라 다름	박사과정: 250만원/월 박사후: 주관기관 기준	지역에 따라 다름 (최대 24백만원 이내/연)	실비	(박사생) 20백만원 이내 (박사후) 40백만원 이내	직접비 3% 이내
과제 지원액	연구비 편성 및 집행 기준				간접비**																
	직접비																				
	연수자 인건비	연수자 체재비	연수자 준비금	국내·외 연구비* 등																	
연수자 구성에 따라 다름	박사과정: 250만원/월 박사후: 주관기관 기준	지역에 따라 다름 (최대 24백만원 이내/연)	실비	(박사생) 20백만원 이내 (박사후) 40백만원 이내	직접비 3% 이내																

▶ 선정평가 기준
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 항목	소 항목
서면평가	지원의 필요성(20)	○ 국제공동 연구의 필요성(20)
	연구내용의 우수성 및 적절성(35)	○ 연구내용의 우수성(20) ○ 연구계획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(15)
	연수자의 역량 및 멘토의 의지(35)	○ 연수자의 역량(20) ○ 멘토의 역량 및 지원의지(15)
	기대성과(10)	○ 기대성과의 우수성(10)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